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27	직원	우수한 교육여건 조성	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.입학 지원	규정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○ 학급 증설, 정원외 전.입학 허용 등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.입학 지원		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1조 및 시도교육청전입 학업무처리지침	06.12.13	○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시도교육청별 전편입학 지침 수정 -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해 정원 외로 전편입학생 수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지시	
			07.1-2	○ 시도교육청 전편입학지침 수정본 수합, 점검(1월 말) ○ 시도교육청 전편입학 지침 확정(2월 말)	
소관부처	교육부	혁신도시특별법 제28조	06.3.14~ 07.1.11	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* 종사자 자녀 전입학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	
담당부서	학교운영지원과		12.1.1	○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 인정 (‘12.1.1,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6항 신설)	